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33664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민법 제681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336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3065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AA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BA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BB 담당변호사 백AB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30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BA기금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피고의 수탁기관인 원고가 소외 안CA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안CA의 매출액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안CA이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현장 방문조사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안CA에 대한 신용조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안CA이 운영한다는 고덕쌀직매장은 가공의 업체로서 보증취급부적격업체라는 사실을 원고가 밝혀내지 못하고 안CA에게 피고의 신용보증을 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라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원고가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뿐더러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위탁보증심사요령 제32조는 원고가 피고 소정의 서류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받은 경우에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허위서류 징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수탁기관으로서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전반에 대하여 담당자의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면책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